

#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(공포)

제 명 :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개정사유

- 「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정에 따라 의석배정,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,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교섭단체의 역할 및 기능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의원의 의석 배정에 관한 협의 대상을 변경함(안 제3조제1항)
-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에 관한 협의 대상을 변경함  
(안 제15조의2)
- 의정자유발언의 발언자 수 및 순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
(안 제33조2제3항)
-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8조2)○

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#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고 선 회



2023년 10월 4일

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규칙 제 48호

##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본문 중 “의회운영위원회와”를 “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”로 한다.

제15조의2 본문 중 “매년”을 “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”으로 한다.

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각 대표의원 또는 대표의원이 지정하는 의원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경우에는 30분까지 발언할 수 있다.

제33조의2제2항 중 “하며,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”를 “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의정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순서는 교섭단체별 소속 의원 수의 비율을

고려하여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.

제6장에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8조의2(교섭단체 대표연설) ① 교섭단체 대표의원이나 대표의원이 지정하는 의원은 매년 첫 번째 실시하는 임시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할 수 있다. 다만,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발언 순서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정당 또는 교섭단체 순으로 실시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